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변창흠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방법, 정수 및 구성을 변경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 및 이사장 제외,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 축소, 안전상정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조합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직접·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
- 나. 조합원 운영위원을 직접·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므로 조합원인 협회장도 투표로 선출하기 위해 당연직에서 제외
- 다. 협회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에서 제외
- 라. 효율적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종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
- 마. 보다 많은 조합원과 전문가에게 조합경영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

하여 운영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
토록 함

바. 운영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
하도록 함

사. 기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
장관이 정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총회가 해당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
기준에 따라 직접·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이하의 위원

제5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의 각 목 외
의 부분 중 “8명 이상 13명”을 “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3년으
로 하되 연임될”을 “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”로 하며, 같은 조
제4항 중 “2명”을 “1명”으로, “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”를 “위원 중에
서 위원들의 직접·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
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으
로 한다.

제51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을 하기
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
해야 한다.

1. 법 제56조제2항의 사업에 관한 사항

2.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
 3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5.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되어 재임 중에 있는 운영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

제3조(운영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① 해당 공제조합 총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이 영 시행일 후 1개월 이내에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1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새로 선출 또

는 위촉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 운영위원은 임기만료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.

1.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: 2021년 12월 31일
2. 2023년 1월 1일 이후 : 2022년 5월 31일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운영위원회) ① (생 략)	제51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 하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 원	1. 총회가 해당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·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 이하의 위원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 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	<삭 제>
5.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	<삭 제>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위촉하는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	6. ----- ----- ----- 9명 ----- -----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----- -----.

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. <후단 신설>

⑤ · ⑥ (생략)
<신설>

<신설>

④ -----
----- 1명-----
----- 위원 중에서 위
원들의 직접 · 무기명투표로 각
각 선출한다. 이 경우 위원장과
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
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
을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
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
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.

1. 법 제56조제2항의 사업에 관
한 사항

2.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
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
는 사항

3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5.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국
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회가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
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

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512